

「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규 조문 대비표(안)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	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제4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대구경북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실적 및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.)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배정한다.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<별표2>에서 정하는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 <별표2>를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변호사업(71101업종), 변리사업(71102업종), 공인회계사업(71201업종), 세무사업(71202업종), 병원(861업종) 및 의원(862업종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<u>최종</u> 배정월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25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		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제4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대구경북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실적 및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.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.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<별표2>에서 정하는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 <별표2>를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변호사업(71101업종), 변리사업(71102업종), 공인회계사업(71201업종), 세무사업(71202업종), 병원(861업종), 의원(862업종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<u>경우에</u>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	- 「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 개정 내용 반영
	(신 설)		부 칙 (2019. 9. 2)			
			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9월 2일(2019년 11월 배정)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특별지원부문의 적용례) 제6조의 개정기준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취급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경과조치) 동 부칙 제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			- 부칙 신설